

예상되는 국제적 경쟁질서에 대한 대책이 필요

이 승 훈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무한경쟁의 시대

WTO 시대가 드디어 그 막을 올렸다. 앞으로 몇 년을 經過期間으로 두고 각 국은 점진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수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실감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각국이 양허 사항들을 본격적으로 실현시켜 나아가게 되면 終局的으로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별 장벽이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로 消滅하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상품의 국제간 이동을 自國의 이익에 맞도록 제한할 목적으로 관세율을 높게 책정하거나 수출입 물량의 上限을 책정하는 방법 등의 조치를 널리 활용하여 왔다. 자유무역 질서의 확립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는 WTO體制는 이러한 關稅障壁과 非關稅障壁을 결과적으로 모두 허물도록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5~6년 정도로 남겨진 經過期間이 종료되면 현재 국내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유리한 高地의 상당 부분은 消滅될 것이다. 進入障壁이 무너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외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노리고 대거 진출하여 올 전망이다. 동시에 외국 시장을 감싸고 있는 통상장벽도 마찬가지로 무너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동안 진출하기 어려웠던 외국 시장으로 진출하기가 그만큼 쉬워지게 된다.

정책적 障壁의 보호 아래 외국 기업들을 따돌리고 국내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안주한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고, 각 기업은 自國政府의 정책적 배려가 배제된 상태에서 세계의 모든 기업을 상대로 경쟁하여야 하는 소위 無限競爭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비록 변화의 내용은 같지만 이것을 수용하는 자세는 나라와 기업에 따라서 다르다. 自國市場이 이미 충분히 개방되어 있고 스스로 막강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은 새롭게 개방될 시장을 공략할 준비 작업에 몰두할 것이다. 국내 시장이 정책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過渡期的으로 보호조치가 용인되는 남은 기간 동안 경쟁력 배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앞으로 몇 년 동안에 무한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내지 못하는 기업

은 WTO의 신경제 질서 아래에 서는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다.

산업 육성과 경쟁 촉진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산업을 정부의 정책적 통상장벽이 보호 아래 두고 있다.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국제 시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치러 왔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정책의 기조가 優秀企業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 부문에서는 선정된 기업 이외의 기업은 그 산업에서 영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결국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국내의 潛在的 進入企業들과의 경쟁으로부터도 철저히 보호되어 왔다. 반면에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신규 기업의 진출과 기존 기업의 도산이 無常하게 이루어졌다.

비록 정책적으로 국산 부품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장려하는 조치가 취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완제품이 최소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외 부품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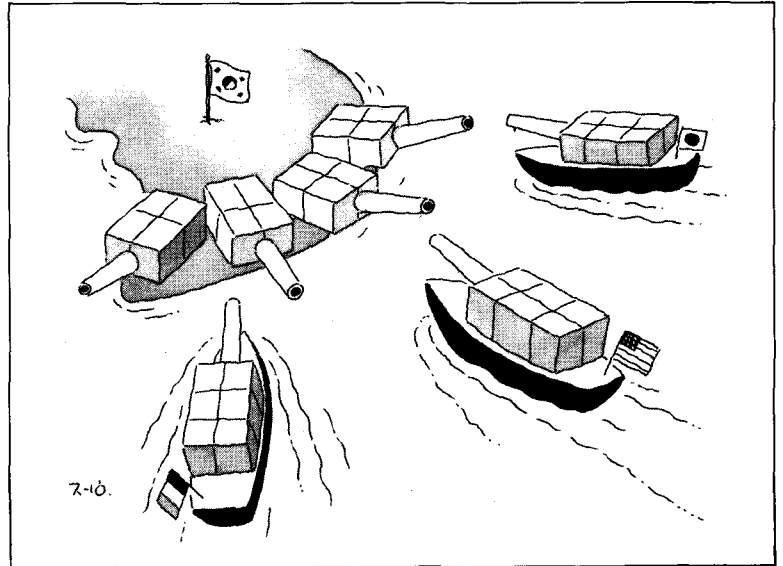
입하계급 허용하는 조치도 함께 취해졌다. 결국 중소기업 부문은 대기업 부문보다도 훨씬 더 경쟁적 여건에서 성장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모기업인 대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견뎌내지 못한다면 그 계열 중소기업들 또한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종래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과 경쟁촉진 정책은 곧잘 서로相反된 방향으로 推進되기 일쑤였다.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戰略産業育成에 투입하기 위하여 산업 정책적 지원은 선별된 몇몇 유망 기업에만 집중적으로 제공되었다.

자원을 얻지 못한 기업은 영업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 질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정책적으로 獨寡占的 산업 조직을 만들어 내는 대신에 이들 獨寡占企業들의 행동을 횡포에 이르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는 것이 경쟁촉진 정책의 기조였던 것이다.

그러나 경쟁 촉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選別企業支援의 산업 정책이야말로 獨寡占的 산업 조직을 초래한 反競爭的 정책이다. 동시에 산업 육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독과점규제 정책이 육성시켜야 할 전략산업 부문의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켰다고 주장한다. 산업정책은 反競爭的이고 경쟁정책은 反産業的이라는 것이다.

경제개발 초기에 턱없이 부족한 개발 자원은 모든 개발도상국들에 걸쳐서 공통된 애로사항이



다. 부족한 개발 자원을 수많은 기업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보다 몇몇 유망기업들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효과적임은 물론이다. 이 집중지원의 효과를 추구하면서 그런대로 경쟁질서를 확립하려면 결국 그동안 우리 정부가 취해 온 정책, 즉 獨寡占助長的 산업정책과 獨寡占規制的 경쟁정책을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모자라는 개발 자원으로부터 최대의 효과를 거둘 목적으로 채택된 選別企業支援的 개발 정책은 다른 어떤 경제 정책에도 우선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주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지만 독과점적 산업 조직이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獨寡占規制的 경쟁 정책은 이 부작용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기 위하여 펼쳐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위를 살피면 獨寡占規制的 경쟁정책은 獨寡占助長的

정책적 장벽의 보호 아래 외국 기업들을 따돌리고 국내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안주한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고, 각 기업은 자국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배제된 상태에서 세계의 모든 기업들 상대로 경쟁하여야 하는 소위 무한경쟁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산업정책의 그늘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미국에서 생활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러 가지 세금의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국산 승용차와 가전제품의 가격이 같은 제품의 국내 가격보다 크게 낮은 것을 알고 있다. 관련 업체들이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 獨寡占力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해외 수출이 아직도 出血輸出이고 그 적자를 내수시장의 이익으로 보전해야 하는 형편이라면 이해가 간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동안 우리나라의 독과점규제정책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경쟁 정책의 전개 방향

WTO시대에서는 산업 정책의 獨寡占助長的 기능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다만 경과 기간으로 인정된 앞으로 몇 년 동안만 그 효력이 유지될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삼성그룹의 승용차 사업 진출 허용을 둘러싼 공방은 관련기업들에 있어서는 결국 몇 년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독과점 이익을 겨냥한 공방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경과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닛산이 직접 진출해 온다고 하더라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것이다.

산업지원정책은 獨寡占助長的으로 펼치되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형태로 경쟁정책을 전개하고

자 하는 종래의 방식은 더이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다. WTO體制의 출범과 더불어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기초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물론 WTO體制에서도 정부는 연구 지원비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통상장벽이 크게 낮아지는 만큼 대기업 부문의 독과점적 산업구조가 유지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국내시장이 지나친 독과점이윤을 만들어낼 때마다 외국 상품은 이것을 노리고 홍수처럼 밀려들 것이다.

결국 정부가 아무리 몇몇 기업들을 집중 육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독과점기업으로 행세하기는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쟁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유의하면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더 이상 독과점기업으로 행세할 수 없는 국내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기업들에 대하여 취해진 여러 규제조치는 이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횡포를 부리거나 독과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保護的 통상장벽이 消滅된 뒤에는 국내 대기업들의 상당수가 독과점적 지위를 잃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규제당국은 이 점을 그때 그때 파악하여 타성에 의한 규제를 지속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無限競爭에 노출된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오히려 위축시키

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둘째, 국내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과 아울러 국내 기업의 新事業進出을 금지 또는 억제하는 조치를 폐지하여야만 한다. 물론 외국 기업들과의 無限競爭에는 小數精銳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신규로 진출하려고 하는 국내 기업과의 경쟁마저도 부담스러워하는 기업이 불과 몇 년 뒤에 先進一流企業들과의 경쟁을 제대로 견뎌낼 리 없다.

오히려 지금부터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국내 신규 기업과의 경쟁을 미리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삼성의 승용차산업 진출을 허용한 것과 제철 및 석유 화학 부문의 신규 진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한 정부의 결정은 이러한 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외국 기업이 독과점기업으로 대두하는 경우에 이를 즉각 규제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국내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은 당연히 외제 상품에 의하여 석권될 것인데 품목에 따라서 몇몇 외국 대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형태로 될 가능성이 크다.

개발도상국들이 약품등과 같이 전세계 시장에 걸쳐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상품에 대해서 공정거래 질서를 강제할 능력은 현실적으로 없는 상태이다. 선진국들의 정부는 단지 自國市場의 경쟁질서만을 생각할 뿐이다. WTO體制에서 통상장벽은 무너졌으

나,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공정거래 질서는 胎動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넷째, 국내 대기업의 행태 또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기업의 영업 영역이 국가 권력이 관장하는 지역의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만큼 결국 多國的 企業의 형태를 띠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다국적기업간 국제적 談話を 통하여 시장을 국가별로 분할 독점하는 사태도 나타날 수 있다. 국제적 談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정거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공정거래 질서 자체와 이것을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국은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가령 미국은 경쟁 제한적 담합에 대하여 대단히 엄격한 자세를 견지해 오고 있으나, 독일은 오히려 이것을 장려해 온

적도 있다. 일본만 하더라도 談合 없는 기업 활동을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WTO 體制에서는 각국이 공정거래 정책을 自國企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집행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각국의 공정거래 제도 자체가 통상장벽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일본의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여 왔다. 기술, 환경 및 노동 조건에 대한 추가 협의 뿐만 아니라 각국의 경쟁정책에 대한 多者間 協商問題도 조만간 제기될 것이다. 새 시대에 맞는 경쟁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논의될 국제적 공정거래 질서의 내용과 그 집행 방안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연구해 두어야 할 것이다. ■

“

오히려 지금부터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국내 신규 기업과의 경쟁을 미리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삼성의 승용차 산업 진출을 허용한 것과 제철 및 석유 화학 부문의 신규 진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한 정부의 결정은 이러한 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공정거래 제도에 관한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제도가 국민의 각계각층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에서는 「공정경쟁」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쟁」지는 공정경쟁 사회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거래 제도에 관한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참신하고 의욕적인 여러분의 글을 다음의 요령대로 보내 주십시오.

- 분 야 : 공정거래와 관련있는 내용이면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 원고매수 : 수필은 15매, 논문은 40~50매(200자 원고지),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를 원고 표지에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원 고 료 : 내용 심사 후 게재된 원고는 본 협회에서 정한 원고료를 드립니다.
- 마 감 : 마감일은 따로 없습니다.
- 보 낼 곳 : (100-74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상의빌딩 621호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 「공정경쟁」출판 담당자 앞
- 전 화 : (02)775-8870~2
- 팩 스 : (02)775-8873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